

특수건물 화재보험 요율 적용방법

윤 동 혁
(본 협회 보험2부 차장)

이번호부터는 특수건물을 중심으로 한 적용실례를 살펴본다.

예 1. 사무실 전용인 4층 이상 건물

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20
 건물구조 :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15층
 보험가입금액 : 750,000,000 원

적용
요건

- 물 건 : 일반물건
- 등 지 : 2 등지
- 건물급수 : 1 급
- 기본요율 : 0.135 %
- 총수할증 : 기본요율의 2 %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$$\boxed{0.135\% \text{ (기본요율)}} + \boxed{0.0027\% \text{ (총수할증)}} = \boxed{0.1377\% \text{ (적용요율)}}$$

(0.135 × 2% = 0.0027%)

○ 화재보험료

$$750,000,000 \text{ 원} \times 0.1377\% = 1,032,750 \text{ 원} \dots\dots\dots 1)$$

특수건물할인 25%

$$1,032,750 \text{ 원} \times 25\% = 258,187 \text{ 원} \dots\dots\dots 2)$$

$$1) - 2) = 774,563 \text{ 원} \dots\dots\dots ③$$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의 7%

$$774,563 \text{ 원} \times 7\% = 54,219 \text{ 원} \dots\dots\dots ④$$

○ 총보험료 (③+④)

$$774,563 \text{ 원} + 54,219 \text{ 원} = 828,782 \text{ 원}$$

(화재보험료) (신체보험료) (총납입보험료)

가. 위 건물에 타사무실과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은 다방이 있는 경우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$$\boxed{0.135\% \text{ (기본요율)}} + \boxed{0.0027\% \text{ (총수할증)}} + \boxed{0.055\% \text{ (다방할증)}} = \boxed{0.1927\% \text{ (적용요율)}}$$

○ 화재보험료

$$750,000,000 \text{ 원} \times 0.1927\% = 1,445,250 \text{ 원} \dots\dots\dots 1)$$

특수건물할인 25%

$$1,445,250 \text{ 원} \times 25\% = 361,312 \text{ 원} \dots\dots\dots 2)$$

$$1) - 2) = 1,083,938 \text{ 원} \dots\dots\dots ③$$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료의 10%

$$1,083,938 \text{ 원} \times 10\% = 108,393 \text{ 원} \dots\dots\dots ④$$

○ 총보험료

$$1,083,938 \text{ 원} + 108,393 \text{ 원} = 1,192,331 \text{ 원}$$

(화재보험료) (신체보험료) (총납입보험료)

나. 위 건물에 타사무실과 방화구획된 다방이 있는 경우 (다방부분 보험가입금액 : 70,000,000 원)

계산

○ 화재보험료

$$\text{다방부분} : 70,000,000 \text{ 원} \times 0.1927\% \times 75\%$$

$$= 101,167 \text{ 원} \dots\dots\dots 1)$$

(특수건물할인 25%)

$$\text{그 외 부분} : 680,000,000 \text{ 원} \times 0.1377\%$$

$$\times 75\% = 702,270 \text{ 원} \dots\dots\dots 2)$$

○ 신체보험료

$$\text{다방 부분} : \text{화재보험료의 } 10\%$$

